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09호 2018. 12. 24(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16호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1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2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22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24호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2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3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안 -	4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	4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3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5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3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8
--------------------	-------------------------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6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7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6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87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
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
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16호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중·장기적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제안 및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제안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및 서구 미래비전 제시에 관한 사항
3. 구정 주요정책 및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정책 수립 시 정책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

제3조(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은 환경, 안전, 문화, 교육, 복지, 도시개발, 교통, 경제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간사 등) ① 위원회 간사는 기획예산실장,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배부)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8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목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을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4조제2항 중 “민간위탁을”을 “민간위탁을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를 “때에”로, “구 의회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동의안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 사무”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시달하고, 위탁사무”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 계획 수립)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근거 법령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추진일정
5. 민간위탁 소요예산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근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심의위원회) ①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의회 의원, 관

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와 현장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행사함에 있어서”를 “행사할 때에”로 한다.

제8조 제목 “(협약체결등)”을 “(협약체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반했”을 “위반하였”으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를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할 경우, 구의회에 동의
를 구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항”을 “구청장은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처분이”를 “조치가”로, “처분이 있는”을 “그 조치가 있는”으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과정”을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4조 중 “시”를 “등 예산과정에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

다.

위원의 연임은 2회까지만 가능하며, 총 재임기간은 지역 구분 없이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모니터링

제21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1명,”을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과 주민위원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그 밖의 사항”을 “참여예산 지원협의회”로 한다.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하고,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참여예산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협의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제27조(기능)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3. 그 밖의 지원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원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원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0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지원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앞에 “제6장 그 밖의 사항”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1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양하며”를 “널리 알리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2항은 2018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2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저소득층”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를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험료의 일부 경감에 의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의료급여법」 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소년소녀가정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제3조제1항제3호 중 “한부모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22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를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로,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2조 중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를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에서 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관하여 알권리”를 “접근할 권리”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환경은 다음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를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을 “그 밖의 사업을 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을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제6항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자율방범대가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법대원”(이하 “방법대원”이라 한다)이란 방법대에서 자율방법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치안센터) 소속으로 기 조직된 자율방법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으로 1년 이상 방법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방법대로 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법대가 원활한 방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
2. 방법대 활동에 대한 야식비
3. 방법대 순찰 차량 유류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방법대의 전년도 연중 활동실적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법대는 구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6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법대원에게 자율

방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방법활동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모범대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며 구청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방법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24호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구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 관련 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 ·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봉사회는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행위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구민”이란 제2호에서 정한 직무 외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5조 제1항에 따

른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사람

나.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다.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 및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와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

라.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3. “부상과 피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거나 신체적·재산적인 피해를 말한다.

4.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의로운 구민과 그 가족 등으로 한다.

②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도 서구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로운 구민이 된 사람과 그 가족 등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중복지원배제)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1. 의로운 구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인정 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구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 결과를 대상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한 때에는 의로운 구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구민증서를 내줄 수 있다.

제8조(위로금의 지급신청)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제9조 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로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로운 구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구민인 경우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구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태아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로금 신청기간) 위로금의 지원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 할 수 없다.

제11조(예우) 구청장은 의로운 구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인천광역시 서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

3. 인천광역시 서구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소개

4. 그 밖에 의로운 구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2조(위로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2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령대를 고려하여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이들을 임원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 지원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집에 학부모가 일일교사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부모와 어린이 집 간의 상호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부모 일일교사”란 어린이 집 학생(유아)을 둔 학부모로서 어린이를 위한 봉사, 체험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부모를 말 한다.

제3조(자격) 학부모 일일교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교사자격이 있는 자.
2.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
3.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조회에 이상이 없는 자.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부모 일일교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학부모 일일교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신뢰받는 어린이 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학부모 일일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어린이 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부모 일일교사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객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통한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운전자”란 노선버스, 영업용(개인, 법인)택시로 한다.
2. “승객”이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대상자)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포상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

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6조(포상대상자의 자격)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근무실적이 모범적인 경우
2. 위급상황에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돌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에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포상대상자의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
2. 사업장의 대표 및 협회의 장
3.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제8조(포상대상자의 선정)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공적심의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시상) ① 구청장은 매 반기 1회 포상하되, 포상의 종류에 따라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인원은 반기 3명 이내로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예는 필요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중복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종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절약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자·구민·구민단체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구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구민·학교·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단체의 책무) 구민단체는 구의 합리적 에너지 이용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구 공무원, 서구의회 의원, 전문가,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부문별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사용
4. 구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6.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입
7.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②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및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5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너지 절약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6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사업자·구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구민·공공기관·단체에게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인센티브 지급, 홍보물품 지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구민·사업자·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3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게 구청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등 관련 접수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부자의 상징물 및 명단의 설치 장소, 규모, 종류, 기간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3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소속된 공무원, 청원경찰을 말한다.

제6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야간 교대 근무자나 주말·휴일 근무 대상자에게 매회 간식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각 호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 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제4호 중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관리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관리규칙」”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6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 453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12.2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12-2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1-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53 (왕길동)	20090922	가정동의 동명을 따. 가정동이란 명칭은 조선조 개국공신 조반이 말년에 이 곳에 와서 佳亭이란 정자를 세운 것에서 유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99-9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 247 (가좌동)	20081231	옛 지명(자연부락)에서 유래	
3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62-10, 662-12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219 (검암동)	20101111	칭라대로 동쪽에 위치	
4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15-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487번길 17 (마전동)	20101111	칭라대로 동쪽에 위치	
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37-2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1길 27 (원당동)	20121025	우리구 해남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아홉번째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00-6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61번안길 32-9 (원당동)	20090922	가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59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30-8 (가좌동)	20081231	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31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30-3 (가좌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851-3, 851-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69번길 9 (오류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칭라동 50	인천광역시 서구 칭라한내로173번길 3-6 (칭라동)	20180827	칭서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 오른쪽으로 분기된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51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31번안길 7 (가좌동)	20170703	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31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52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31번안길 5 (가좌동)	20170703	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31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8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1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단위: 백만원)

연번	시설명	사업명	위 치	사업 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단계 별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1	도로	중1-68	석남동 223-179번지	L=2,004m B=20m	2020~ 2022	13,600		13,600.0	6,800.0	6,800.0	1단계	
2	도로	중1-70	가좌동 148-61번지	L=462m B=20m	2019~ 2021	9,370		9,370.0	4,685.0	4,685.0	1단계	
3	도로	중1-71	가좌동 173-81번지	L=410m B=20m	2020~ 2023	17,157		17,157.0	8,578.5	8,578.5	1단계	
4	도로	중1-115	마전동 685-30번지	L=362m B=20m	2020~ 2022	2,372		2,372.0	1,186.0	1,186.0	1단계	
5	도로	중1-126	오류동 847-4번지	L=615m B=20m	2020~ 2023	9,910		9,910.0	4,955.0	4,955.0	1단계	
6	도로	중1-140	오류동 395-161번지	L=676m B=20m	2020~ 2023	10,613		10,613.0	5,306.5	5,306.5	1단계	
7	도로	중2-85	원창동 4-7번지	L=493m B=15m	2020~ 2023	5,479		5,479.0	2,739.5	2,739.5	1단계	
8	도로	중2-116	원창동 382-110번지	L=281m B=15m	2020~ 2022	3,814		3,814.0	1,907.0	1,907.0	1단계	
9	도로	중2-117	원창동 382-12번지	L=1,238m B=15m	2020~ 2023	23,830		23,830.0	11,915.0	11,915.0	1단계	

연번	시설명	사업명	위 치	사업 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단계 별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10	도로	중2-126	오류동 434-9번지	L=723m B=15m	2020~ 2023	9,379		9,379.0	4,689.5	4,689.5	1단계	
11	도로	중2-160	오류동 505-2번지	L=808m B=15~20m	2020~ 2022	6,010		6,010.0	3,005.0	3,005.0	1단계	
12	도로	중2-225	대곡동 497번지	L=996m B=15m	2019~ 2021	13,067		13,067.0	6,533.5	6,533.5	1단계	
13	도로	중2-226	금곡동 533-1번지	L=1,306m B=15m	2020~ 2023	12,976		12,976.0	6,488.0	6,488.0	1단계	
14	도로	중2-240	왕길동 산95번지	L=590m B=15m	2020~ 2022	4,500		4,500.0	2,250.0	2,250.0	1단계	
15	도로	중3-72	검암동 319번지	L=765m B=12m	2020~ 2023	7,200		7,200.0	3,600.0	3,600.0	1단계	
16	도로	소1-5	원창동 63-4번지	L=266m B=10m	2020~ 2022	3,480		3,480.0	1,740.0	1,740.0	1단계	
17	도로	소1-6	원창동 4-16번지	L=294m B=10m	2020~ 2022	3,251		3,251.0	1,625.5	1,625.5	1단계	
18	도로	소1-8	원창동 산31-2번지	L=285m B=10m	2020~ 2022	3,297		3,297.0	1,648.5	1,648.5	1단계	
19	도로	소1-9	원창동 133-4번지	L=244m B=10m	2020~ 2022	3,845		3,845.0	1,922.5	1,922.5	1단계	
20	도로	소1-15	석남동 650-77번지	L=168m B=10m	2019~ 2021	3,494		3,494.0	1,747.0	1,747.0	1단계	
21	도로	소2-4	가좌동 4-14번지	L=276m B=8m	2020~ 2022	2,371		2,371.0	1,185.5	1,185.5	1단계	
22	도로	소2-6	석남동 111-14번지	L=111m B=8m	2020~ 2023	953		953.0	476.5	476.5	1단계	
23	도로	소2-8	석남동 111-1번지	L=144m B=8m	2020~ 2023	2,882		2,882.0	1,441.0	1,441.0	1단계	
24	도로	소2-30	석남동 201번지	L=804m B=8m	2019~ 2021	3,583		3,583.0	1,791.5	1,791.5	1단계	
25	도로	소2-b	석남동 산118-3번지	L=29m B=8m	2019~ 2020	293		293.0	146.5	146.5	1단계	
26	도로	소3-1	석남동 217-5번지	L=498m B=6m	2020~ 2022	4,607		4,607.0	2,303.5	2,303.5	1단계	
27	도로	소3-1	가좌동 30-43번지	L=283m B=6m	2020~ 2023	4,836		4,836.0	2,418.0	2,418.0	1단계	
28	도로	소3-2	석남동 222-47번지	L=328m B=6m	2020~ 2022	2,790		2,790.0	1,395.0	1,395.0	1단계	
29	도로	소3-28	백석동 86-18번지	L=72m B=6~8m	2021~ 2022	1,367		1,367.0	683.5	683.5	1단계	
30	도로	소3-504	왕길동 204-6번지	L=293m B=6~8m	2022~ 2024	2,474		2,474.0	1,237.0	1,237.0	2-1 단계	
31	도로	소3-506	마전동 47번지	L=62m B=6m	2024	399		399.0	199.5	199.5	2-2 단계	
32	도로	소3-508	마전동 49번지	L=37m B=6m	2024	270		270.0	135.0	135.0	2-2 단계	
33	도로	소3-3	시천2 취락지구	L=66m B=6m	2022	270		270.0	135.0	135.0	2-1 단계	
34	도로	소3-1	경서 취락지구	L=321m B=6m	2024	995		995.0	497.5	497.5	2-2 단계	
35	도로	소3-3	경서 취락지구	L=69m B=6m	2024	214		214.0	107.0	107.0	2-2 단계	
36	도로	소3-4	경서 취락지구	L=42m B=6m	2024	130		130.0	65.0	65.0	2-2 단계	

연번	시설명	사업명	위 치	사업 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단계 별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37	도로	소3-1	시천1지구	L=329m B=6m	2022~ 2023	1,453		1,453.0	726.5	726.5	2-1 단계	
38	도로	소3-2	시천1지구	L=232m B=6m	2022~ 2023	570		570.0	285.0	285.0	2-1 단계	
39	도로	소3-3	시천1지구	L=127m B=6m	2024	505		505.0	252.5	252.5	2-2 단계	
40	도로	소3-4	시천1지구	L=90m B=6m	2024	276		276.0	138.0	138.0	2-2 단계	
41	도로	소3-1	하동지구	L=352m B=6m	2024	1,042		1,042.0	521.0	521.0	2-2 단계	
42	도로	소3-2	하동지구	L=367m B=6m	2024	1,669		1,669.0	834.5	834.5	2-2 단계	
43	도로	소3-3	하동지구	L=205m B=6m	2024	1,327		1,327.0	663.5	663.5	2-2 단계	
44	도로	소3-4	하동지구	L=52m B=6m	2024	418		418.0	209.0	209.0	2-2 단계	
45	도로	소3-5	하동지구	L=23m B=6m	2024	206		206.0	103.0	103.0	2-2 단계	
46	도로	소3-7	하동지구	L=110m B=6m	2024	713		713.0	356.5	356.5	2-2 단계	
47	도로	소3-8	하동지구	L=139m B=6m	2024	1,016		1,016.0	508.0	508.0	2-2 단계	
48	도로	소3-9	하동지구	L=69m B=6m	2024	204		204.0	102.0	102.0	2-2 단계	
49	도로	소1-1	검단2취소지역	L=848m B=10m	2022	7,293		7,293.0	3,646.5	3,646.5	2-1 단계	
50	도로	소2-1	검단2취소지역	L=207m B=8m	2022	1,559		1,559.0	779.5	779.5	2-1 단계	
51	도로	중3-1	검단2취소지역	L=2,199m B=12m	2022	27,709		27,709.0	13,854.5	13,854.5	2-1 단계	
52	주차장	노외주차장	석남동 산118-3	A=4,613㎡	2021	7,600	6,100	1,500.0	750.0	750.0	1단계	
53	주차장	노외주차장	석남동 515-3	A=1,361㎡	2021	3,524		3,524.0	1,762.0	1,762.0	1단계	
54	공원	소공원	시천동 97-3번지	A=335㎡	2024	395		395.0		395.0	2-2 단계	
55	공원	소공원	검암동 454-7번지	A=300㎡	2024	357		357.0		357.0	2-2 단계	
56	공원	소공원	석남동 322-32번지	A=1,358㎡	2024	2,242		2,242.0		2,242.0	2-2 단계	
57	공공 시설	파출소	검암동 514-7번지	A=649.5㎡	2019	3,475	3,475				1단계	
58	공공 시설	동사무소	석남동 488-8	A=1,734㎡	2020~ 2021	1,600		1,600.0		1,600.0	1단계	

2.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87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1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2018.7.2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4조)
-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민간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9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감사실장, 전화 032-560-4073, 팩스 032-560-270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2018.7.2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 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라.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4조)
- 마.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민간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항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공익신고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지급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구청장은 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7조(포상)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 기업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87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정비하고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관할 대상에 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된 조항을 관할공직 유관단체로 수정(안 제3조)
- 연차보고서의 구의회 제출 기한 명확화(안 제9조)
- 위원회의 운영규정 신설(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감사실 (전화 032-560-4074, FAX 560-270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감사실(032-560-407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정비하고,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관할 대상 중 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된 조항을 관할 공직유관단체로 수정(안 제3조)
- 나. 연차보고서의 구의회 제출 기한 명확화(안 제9조)
- 다. 위원회의 운영규정 신설(안 제10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후단 중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관할 공직유관단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1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9조 중 “정례회에”를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감독 그 밖의”를 “감독,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 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 라 <u>구청장이</u> 위촉 또는 임명한 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구성) ① ----- ----- ----- ----- ----- -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u>-----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p>1. 2. (생략)</p> <p>3. <u>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 단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 한 사항(신설 2008.1.15, 개정 2016.7.8.)</u></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관할 공직유관단체</u>----- ----- -----</p>
<p>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u>1차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 <u>1회</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p>

① (생략)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구의회에 보고)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

제9조(구의회에 보고) -----
----- 정례회 개최 전까지 -----

---- 감독, 그 밖에 -----

-----.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